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8
------------	-----

제출일자 : 1998. 10.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혈행제도 운영상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8조 제3항 “근무상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 및 제4항 “정년 연장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 제10조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 제1호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중의 “6월이상”을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고,
- 제11조 휴직에 관한 규정 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 제11조의2 (휴직기간) 및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3호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표준안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생 략) <u>③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u>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 · 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현행과 같음) <u>③《삭 제》</u> <u>④《삭 제》</u>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제10조(직권면직)----- ----- ----- ----- ----- 1.----- <u>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u> ----- ----- ----- -----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2. ~ 4. (생략)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신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38)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8. 10. 31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8. 11. 7
- 라. 위원회 상정 : '98. 11. 13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송원수)

- 공무원 정년단축 등 지방공무원법이 '98.9.1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연장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규정상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5. 심사결과 : 원안가결